

1,000m² 이상
파프리카 재배 농가는
자조회에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개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의무자조금 적용대상
확대(파프리카 전체 농가)

수출
회원

파프리카 재배 온실 실 재배면적이 1,000m²(302.5평)
이상으로 현재 자조회 소속 농단(면적 10,000평)에 가입
(해당 지역 농단의 가입 동의서 필요)

일반
회원

수출회원 가입조건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근지역 또는
근거리 농단이 가입을 제한하거나 한정(가입 거부, 배척
등)하는 경우 신규 실사 후 자격 여부 결정

신규 회원 회비 및 가입비

- 회비 : 평당 1,000원/년(년 2회 분납)
- 가입비 : 수출 회원만 해당



회원 가입 상담 안내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기준 등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전화 상담

Tel : 042)471- 9818

상담시간 : 09:00 ~ 18:00

Fax : 042)471- 9739

Email : kpga1999@naver.com

함께 키우는 더 큰 세상

생산자에게는 기쁨을,
소비자는 만족을~





자조회 설립목적

자조회는 회원 상호 간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하여 의무 자조금을 조성·운영함으로써 파프리카 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2000.09

자조회 설립인가
(농림부 설립허가
제209호)

2017.07

파프리카의무자조금
공식 출범

자조회 사업

